

2026년도 「한-중 공동연구」 신규과제 공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「한-중 공동연구」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5월 6일

<주무부처>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
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

1. 사업개요

☐ 사업분류 : 세부국가간협력기반조성 > 내역공동연구 > 내내역한-중 공동연구

☐ 사업목적

- 중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상호 협력기반 확충

☐ 지원내용

공모 형태	지원분야*	연구기간 (연구개시일**)	연간 연구비*** (총 연구비)	선정규모****
자유 공모	①BT, ②ICT, ③Renewable Energy, ④Medical Science, ⑤Aerospace, ⑥Climate Change(adaptation)	3년(36개월) (‘26.10월 중)	60백만원 (180백만원)	12개 내외

* 중국 측 연구자와 지원분야 협의 후 반드시 동일한 분야로 지원해야 함.

** 연구개시일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*** 간접비 :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의거 5% 적용

**** 지원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선정과제 조정 가능

2. 신청(수행)자격 및 참여 제한

□ 신청자격

- **(연구개발기관)*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혁신법 제2조(정의)

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 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 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 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 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- **(연구책임자)*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및 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

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

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
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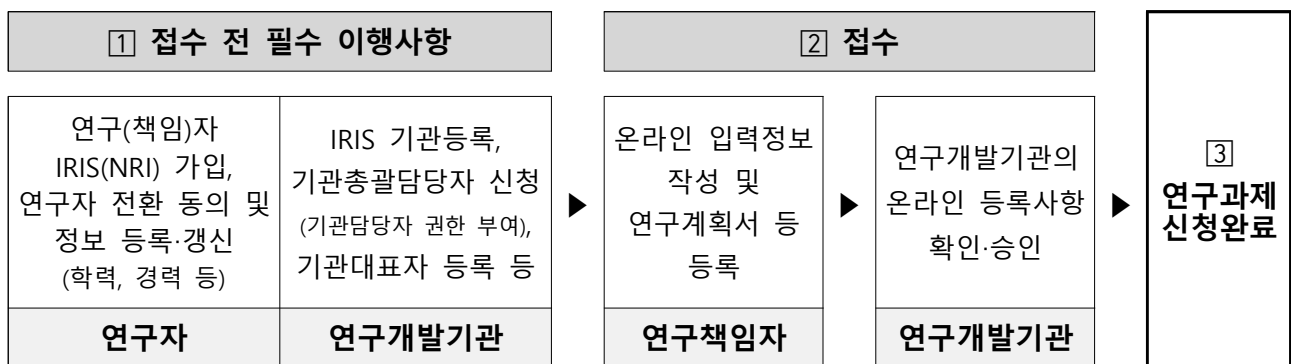
□ 참여제한

- **(1인 1과제)** 한-중 공동연구사업 1인 1과제 수행 제한 기준 적용
- **(정부R&D 공통 제한사항)**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과제신청 및 참여가 가능함. 신청 후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,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,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-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 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(<http://www.ntis.go.kr> 로그인 후 확인 가능)

- **(차별성)**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차별성*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,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
- * NTIS를 통해 연구목표,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차별성 여부 최종 결정
- **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**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**연구과제 수 상한 제도(3책5공)를 적용하지 않음.**

3. 신청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

- 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- ① (연구자) ①IRIS 회원가입, ②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- *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 / 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- ※ ①/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
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- 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-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- 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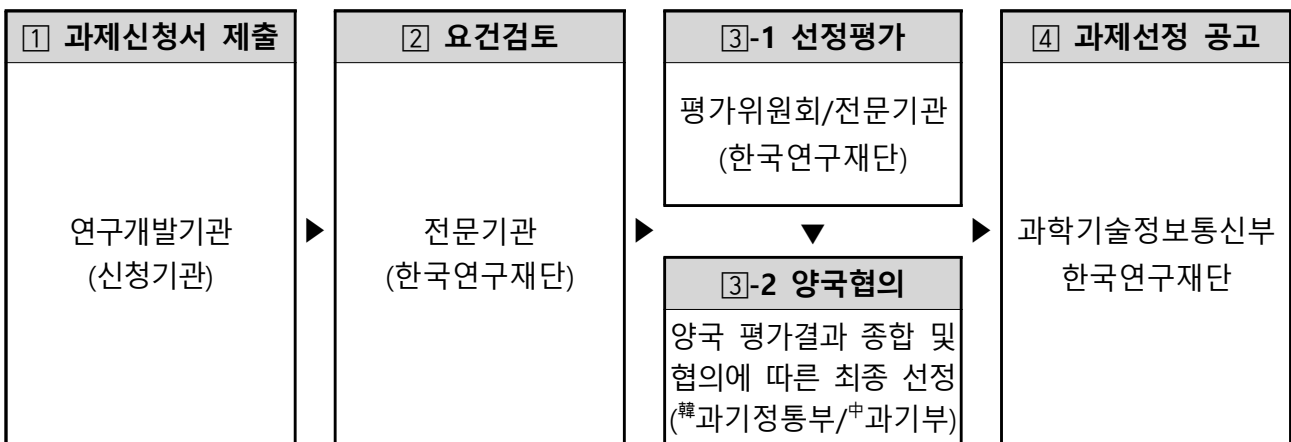
4.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
[참고] 동 사업은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로, 한국과 상대국 간의 상이한 평가절차와 선정협의 과정 등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선정 공고가 지연될 수 있음.

□ 추진근거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선정)

□ 선정절차



- ① **과제신청** : 한국 측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과제신청서 제출
 ※ 중국 연구개발기관은 중국 과학기술부 공고 및 양식에 따라 과제 신청
- ② **요건검토** : 접수마감 후 실시하며, **자격요건(양국 공동접수 여부 등)**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③ **선정평가** : 양국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며, **평가결과 종합 후 협의*를 통해 최종 선정과제 확정**
 * 양국 평가결과가 모두 우수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함.
- ④ **과제선정** : 양국 부처의 최종승인 절차를 거쳐 선정과제 공고 실시

□ 평가방법

- **(평가방법)** 연구과제 특성 및 연구개발 단계 등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방식* 도입
 * 상대·절대·혼합, 서면·토론·발표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조합하여 평가계획 수립
- **(평가위원)*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

혁신법 시행령 제27조(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)

-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(이하 “연구개발과제평가단”이라 한다)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(候補團)을 구성해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.

○ **(평가항목)** 공동연구 필요성, 계획 우수성, 연구역량,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

평가항목	세부내용
공동연구의 필요성	-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- 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- 해외 연구주체와의 협력관계 및 상대기관의 기여도
연구계획의 우수성	- 연구과제의 필요성, 창의성 및 우수성 - 연구목표와 내용의 우수성, 달성가능성 - 연구개발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추진방법의 질적 수준
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	- 해당 분야 연구 성과의 우수성 및 동 사업과의 연계성 - 국내 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연구팀의 수행능력 - 국외 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연구팀의 수행능력
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	- 국제공동연구 수행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 - 양국 간 협력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- 예상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활용가능성

※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○ **(이의신청)** 피평가자는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 통보

※ 연구개발과제평가단·평가위원 선정, 연구비 결정,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, 평가방식(상대·절대·혼합, 서면·토론·발표, 블라인드, 평가단계 등)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

5.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

사업명	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	연구개발기관 승인가간
한-중 공동연구	2026.5.11.(월) 14:00:00 ~ 2026.6.18.(목) 17:00:00	2026.5.11.(월) 14:00:00 ~ 2026.6.19.(금) 17:00:00

※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 반드시 “제출완료” 처리가 되어야 하며(“계획서 작성 중”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), 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 이후에 접수된 데이터 및 파일은 변경 불가

※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함.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	필수여부	분량제한	비고
1	연구개발 계 획 서	PART1(표지1)-웹입력	○	-	[양식1]
		PART2(본문1)-작성서식	○	20쪽 이내	
		PART3(본문2)-웹입력	○	-	
2	연구계획 영문요약서		○	2쪽 이내	[양식2]
3	신규과제 기타증빙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	○	-	[양식3]
		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등	○	-	
4	기업 참여의사 및 자격 적정성 확인서		해당시 제출	-	[양식4]
5	기타 증빙(필요 시) ※ 별도 양식 없음.		-	-	-

6. 기타사항

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.

※ 「과학기술기초법»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»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»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»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
□ 생성형 인공지능(AI) 사용시 유의사항

※ 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[개정판] (‘25.9, 한국연구재단) 참조

○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중간(단계)/결과(최종)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 및 활용할 경우,

① 해당 자료의 적절한 위치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(권장)

표기 항목(예시) : **AI 도구 회사/연도/이름(버전, 출시일자/활용일자), [자료 유형]*, URL, 활용방법** 등

* 자료 유형: 대형언어모델(LLM), 소프트웨어(SPSS, MATLAB 등 통계나 수치분석 도구 등) 같은 AI 도구의 유형

② 연구자가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AI 활용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점검, 필요시 수정·보완

※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표절, 위조, 변조 등 다양한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 예방 목적

③ AI 활용 시 연구정보(연구데이터, 과제정보, 수행자 개인정보)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

- 연구개발계획서 등 각종 연구자료를 AI 도구에 업로드하여 연구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,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.

□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

-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(또는 학술대회)를 활용
-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(학생연구자 포함)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
※ 연구(책임)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(선정·단계·최종)에 반영될 수 있음.

□ 연구성과 관리

- 공동연구에 의해 확보되는 우선실시권, 기술료 배분 등은 연구개발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
-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하여 연구개시 이전에 양측 연구기관 간 ‘지적재산권에 관한 합의서’ 체결 의무화 ※ 연구협약 체결 시까지 동 합의서 제출 필수

□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.

-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천불 이상의 금전·유가증권·교통·숙박 등을 제공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, 신청·선정·지정·협약·계약 등을 포함하여 단순 문의·제안·논의·종료사항은 미포함

□ 중국 측 연구책임자와 협의 시 참고사항

○ 중국 측 프로젝트 협력 목표, 성과 및 평가 지표

- 한국 측 파트너와 공동으로 논문 1편 이상 발표
- 한국 측 연구자 초청 2인 이상(1개월 이상)
- 연구 주제와 관련된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 1회 이상 공동개최

※ 위 내용은 중국 측 공고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, 양국 연구책임자 간 협의 시 상대국에 확인 필요

□ 사사표기(양식)

▶ 국문표기

이 성과*는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(IRIS 과제번호).

▶ 영문표기

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(NRF)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(MSIT**) (IRIS 과제번호).

* 성과는 논문,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/ ** Ministry of Science and ICT

7. 추진일정(안) ※ 하기 일정은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일정	추진내용	비고
2026.5.6.(수)	· 한-중 공동연구 사업 신규과제 공고	-
2026.6.18.(목)	· 신규과제 접수 마감	-
2026.7~9월	· 선정평가 및 부처심의	-
2026.10월	· 신규과제 연구개시	-

8. 문의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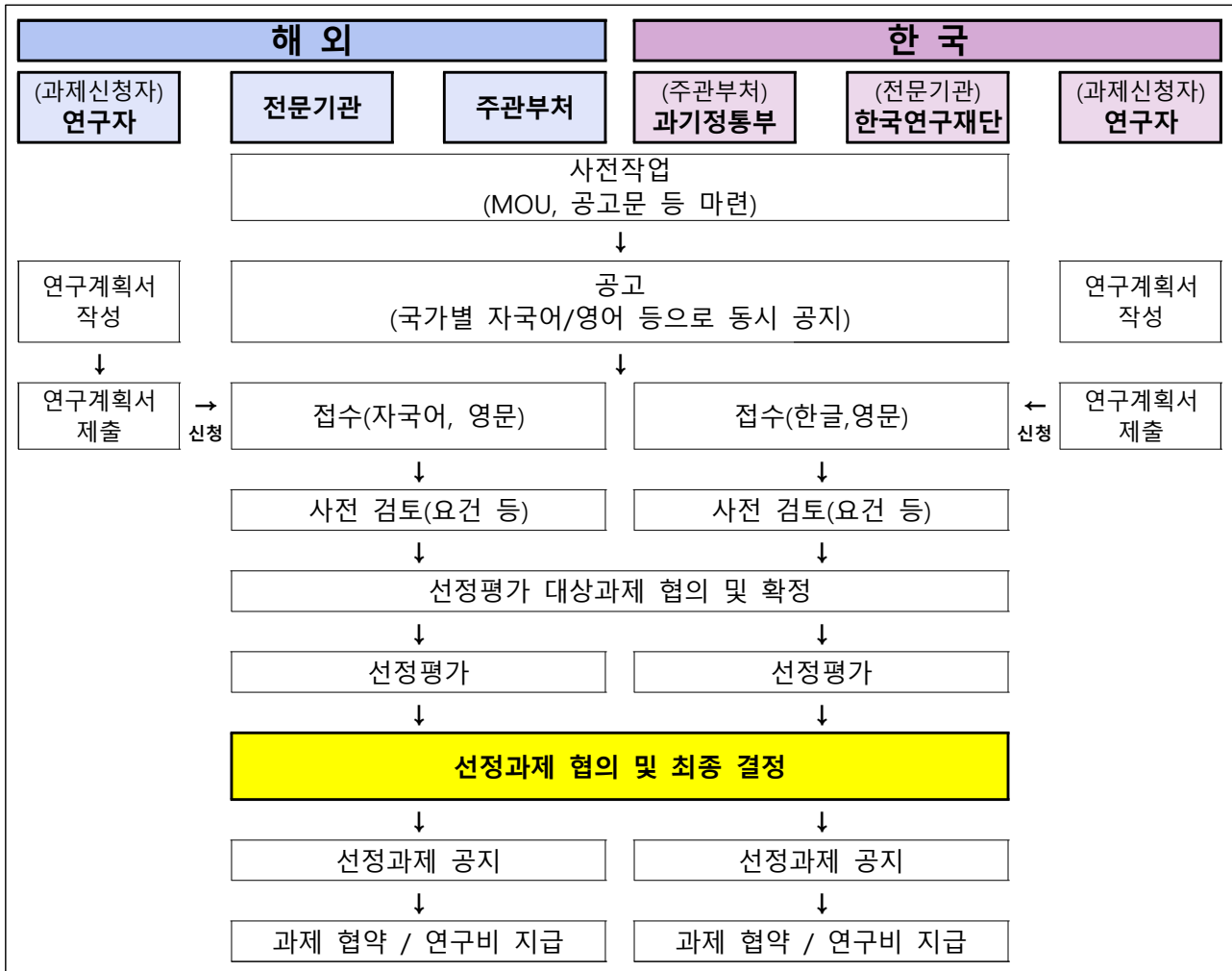
구분	담당부서	연락처
한-중 공동연구사업	한국연구재단 미주아시아협력팀	(사업관련) 02-3460-5702 (접수관련) 02-3460-5704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IRIS)	IRIS 콜센터	1877-2041
	IRIS 홈페이지	알림·고객>시스템·서비스문의>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

참 고

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(공동연구) 추진체계 및 평가절차

□ 사업 추진 체계



□ 선정평가 절차 ※ 하기는 표준절차이며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



- 사전검토: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,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
※ 양국 과제가 모두 사전검토를 통과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 포함
- 선정평가: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항목 당 점수 부여
※ 상대국 과제의 선정평가는 상대국 기관에서 시행
- 양국협의: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
※ 양국 전문기관이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적격과제 추천 후 합의를 통해 최종과제 선정